

CHIC2019

CHIC-Young Blood 2019(Spring)

2019.03.12(Tue)-14(Thu)

3H, National Exhibition&Convention Center, Shanghai, China



참가 약관

제 1 조 (용어의 정의)

1. '전시회'라 함은 『CHIC-Young Blood 2019(Spring)』을 말한다.
2. '한국공동 기획자'라 '메이비원주식회사(패션인사이드, 이하 기획자)'를 말한다.
3. '전시자'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패션관련 회사·조합·단체 등을 말한다.

제 2 조 (참가신청 및 계약)

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자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전시회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납입조건)

전시자는 참가비의 50%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, 잔금은 2018년 12월 28일(금)까지 납입해야 한다.

제 4 조 (전시면적 및 위치 배정)

1. 전시장은 CHIC 전시장 중 『CHIC-Young Blood 2019(Spring)』 전시관으로 하며, 전시관 내 부스 위치는 참가신청일, 참가계약금 납입일, 참가규모 등에 의거 기획자가 효율적으로 배정하며, 기획자의 결정에 대하여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2. 면적 및 위치배정이 결정된 이후에도 기획자는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사유로 전시자는 참가 취소나 배상,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5 조 (전시장치 및 원상복구)

1. 전시자는 지정된 장치 기간 내에 부스장치를 완료하여야 하며, 사용시간 외 추가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시간 외 사용료(임대료)를 납부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는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기간 내에 전시품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전시자의 태만으로 기획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전시자가 부담한다.

제 6 조 (전시회 운영 및 관리)

1.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2. 참가업체가 전시하는 물품은 상표 혹은 기타 권리침해 행위를 포함할 수 없다. 전시기간 동안 참가업체는 타 기업의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.
3. 참가업체는 전시 기간 동안 타인의 물품파손 등 부당한 경쟁행위를 할 수 없다.
4. 전시자가 출품자 명부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기획자는 즉시 중지·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고,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7 조 (전시장 내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)

1.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자기 부스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비하여야 하며 기획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3.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 등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기획자 또는 타인에게 여하한 종류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진다.

제 8 조 (계약해지)

1.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합의 없이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획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2.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, 전시회 참가신청을 취소하려면 참가업체는 미리 서면으로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.
3.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의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7일 이내에 기획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, 잉여 시 반환한다.
 - 2018년 11월 30일 이전 :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%
 - 2018년 11월 30일 이후 :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%
4. 전시자가 기획자와 사전협의 없이 전시면적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재임대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전시회 취소 및 변경)

1. 기획자는 천재지변, 정부의 요청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될 경우 전시회를 취소하거나 개최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기획자는 보상하지 않는다.

제 10 조 (보충규정)

기획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기획자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.

제 11 조 (분쟁해결)

본 참가규정에 관한 기획자,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.

년	월	일
대표자		(인)